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7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7년 11월 21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출석에 의한 대면심의만 가능토록 할 경우 행정의 경직성과 긴급 사안에 대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우며, 경미한 사항까지 과도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서면심의가 가능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(안 제9조제4호).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할 수 없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</p> <p>제9조(심의회 운영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</p> <p>제9조(심의회 운영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출석(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)으로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</p> <p>제9조(심의회 운영)</p> <p>①~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</p> <p>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할 수 없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9조(심의회 운영) ①~③ (생략)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9조(심의회 운영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.</u> <u>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 한 사안인 경우</u> <u>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</u> ⑤ (현행과 같음)</p>